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소개

센터 비전

IT · 금융 융합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민·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의 활발한 출현 및 성장을 유도

주요기능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술벤처 육성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및 다각적 형태로 지원
-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핀테크 분야 핵심기술 연구 개발 지원

센터 운영 프로그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컨설팅 제공, 핀테크 행사 개최, 금융회사와의 1:1멘토링 연결, 국내외 핀테크 분야 조사연구, 리더스 아카데미 및 랩 운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혁신금융서비스',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하는 '지정대리인제도', 신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기존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실시하게 하는 '위탁테스트'를 지원합니다.

컨설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금융사 핀테크 업무 실무자들이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핀테크 사업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창업 자금 조달, 법률상담, 해외진출컨설팅지원, 특허 상담 등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핀테크 행사

핀테크 기업들에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외 데모데이 행사 및 정기포럼 등을 통해 서비스 홍보, 마케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멘토링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업권 종사자에게 회계, 법무, 금융업, IT 등의 분야에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더스 아카테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IT 등 핀테크 전반에 걸친 교육을 제공합니다.

리더스 랩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에 사무공간 제공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핀테크 조사연구

국내외 핀테크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핀테크 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본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2층 (분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별관 218호 (전화) 031-757-0911 / 02-704-4100



1. 금윰혁신지원 특별법

1-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소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란?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규제체계가 없었고, 신규 금융업 진입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이 있어 핀테크 활성화가 어려웠음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
- 소비자 금융, 쉬운 금융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지원

금융이 🙀 뀐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배경



금융혁신을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호

주체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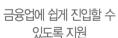
구분

금융소비자

핀테크 기업









시대에 맞는 금융규제 체계 도입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도입

국내 핀테크 경쟁력 강화

획일적인 금융서비스로 선택권이 제한적 소비자 사용성 증대 및 금융서비스 선택의 다양화 복잡한 규제 및 높은 장벽 때문에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 출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해도 시범영업이 불가

1-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처,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신청자격 및 대상 서비스

- 신청자격: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
- 대상 서비스 :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 ① 서비스의 혁신성, ② 소비자 편익, ③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④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⑤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⑥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 ① 지정신청: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 ② 선정심사: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등 심사
- ③ 특별법 적용: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 적용
- ④ 혁신금융사업자 감독: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시, 테스트 중지 및 변경조치
- ⑤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이 충분한 경우에만 테스트 허용
- ⑥ 시장안착 지원: 금융혁신 및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입법조치 권고

-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독 및 소비자 보호 병행

시범영업 및 특례적용

-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영위 가능
-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 인정

감독 및 소비자 보호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경우 지도/시정
-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토록 의무화, 지정 심사에 반영
-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보장 장치 마련토록 의무화, 지정 심사에 반영
- 테스트 종료 후에도,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검증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

1-3. 규제신속확인 제도

-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













- A. 법령 등 적용 여부 확인 신청 B. 30일 이내 회신
-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타 행정기관 소관사항 존재 시, 최장 30일 추가
- 가. 확인 요청 - 타 행정기관 소관사항 존재 시
 - 나. 30일 이내 회신

-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종합으로 규제 확인지원
-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타부처 법령에 관련된 신청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해당기관의 의견을 받아 원스톱 서비스 가능

1-4. 지점대리인 제도

-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대출, 예금, 신용조회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

주요내용

-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 가능
- 위탁자인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을 관리·감독하여 금융회사 고객들의 피해 및 위험발생을 방지
- 자본시장 등 기존에 적용이 어려웠던 업권까지 금융회사가 위탁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시)

- (은행)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개설·해지·입금·지급 업무
- (보험) 보험 인수 여부 심사 및 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변경·해지·부활처리.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1-5. 위탁테스트 제도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출시 전 시범영업을 실시해보는 제도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회사, 핀테크산업협회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 핀테크 기업이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 ※ 현재 운영중인 위탁테스트 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









(핀테크산업협회)

② 실무협의체 정기회의 진행

③ 금융회사·개별 기업 간 테스트 세부 협의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핀테크 지원사업

2-1.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및 비용지원

- 핀테크 스타트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금융 혁신을 촉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최대 2년 범위 내 지정, 2년 연장 가능)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 비용 지원
- 테스트 비용 지원 세부 기준 최대 100개의 핀테크 기업에 혜택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테스트베드(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참여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범위	-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 (나머지 자비 부담)를 1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규모	- (혁신금융서비스) 최대 40개 기업 - (지정대리인) 최대 30개 기업 - (위탁테스트) 최대 30개 기업 **지원 금액, 기업 수는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사후관리	-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인프라 자산은 해당기업,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각각 장부에 별도로 등록 · 관리 - 원칙적으로 5년 내 매각 불가 - 부정수급자의 경우 제재 및 환수
중복지원	- 동일 회계연도 内 테스트 비용 중복지원은 불가(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예시 1) '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 19년도 지원 후 '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 2) '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 비용 지원받은 후 '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 비용지원 불가
비용지원	- 각 분기별 신청접수(3, 5, 7, 10월) -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식, 첨부서류 등 안내 예정(공고문은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게시)

^{*} 각 테스트베드별 시범영업의 수준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 테스트베드 참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사업성, 시장성, 비용 등이 포함된 신청서 등을 제출

4. 최종점검 및 사후관리

테스트 진행상황 점검,

비용 사용 적정성 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업선정위원회' 가 대상 선정 (서류 및 발표평가) → 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3. 비용지원

선정기업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 후, 기간 내에 건별 구매증빙, 구매사유 등 자료 제출

2. 지원 대상기업 선정

2-2.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핀테크 기업이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성장 단계,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

멘토링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문 멘토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사무공간 및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핀테크 기업 재직자, 예비 창업자 및 구직자 대상으로 나누어 핀테크에 특화된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에 회계 · 세무, 법률, 특허 등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③ 성장기업

2-3. 국민참여 핀테크 행사

- (코리아 핀테크 위크) 국민들이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핀테크에 대한 의식 수준 제고
-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핀테크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 유도



